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기 획 재 정 부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계약제도실장)
(경유)

제목 기술사용료 미반영한 물량내역서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질의회신

1. 계약제도신-153(2011.03.18)과 관련한 회신입니다.

2. 기술사용료는 설계서에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계약상대자가 당해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신기술 보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신기술 등의 사용은 계약상대자의 임의적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은 「국가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당해 기술사용료를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부당한 특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등의 기술사용료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였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설계서의 오류·누락으로 볼 수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기획재정



주무관 류남욱 사무관 김대은 ★계약제도과장 권영 03/25 김재신

협조자

시행 계약제도과-297 (2011. 03. 25.) 접수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전청사 1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전화 02-2150-5223 전송 02-503-9291 / jknamu@mosf.go.kr / 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